

#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6년 2월 23일

제안자 : 장준호 의원의 4

## □ 제안이유

-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의 통합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3조3항의 규정에서 시험위원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험실시 시기에 맞춰 개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과는 불부합 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함

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

## 수정안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수당) ① ~ ② (생략)</p> <p><u>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수당) ① ~ 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삭제)</p>